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향

어촌정책연구실

| 연구책임자 |

- 이승우 연구위원 swlee@kmi.re.kr 051-797-4561

| 연구진 |

- 박상우 부연구위원 swpark@kmi.re.kr 051-797-4562
- 김유진 연구원 kyj@kmi.re.kr 051-797-4566
- 이호림 연구원 holimL@kmi.re.kr 051-797-4565

| 감리위원 |

-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jkryu@kmi.re.kr 051-797-4532

• 목 차

요약	01
Ⅰ. 머리말	03
Ⅱ.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05
Ⅲ. 국내외 유사사례 및 시사점	13
Ⅳ.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관리 방향	25
Ⅴ.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지침(안)	33
Ⅵ.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63

요약



- 어촌정책은 민간주도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어촌특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나타났던 시책 착오 및 문제점을 개선
 - OECD 선진국들에서 나타났던 지역균형발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발전 도모함
 - 국내 어촌개발도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촌특화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주도의 상향식 어촌개발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한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체계적인 전담기구 마련 중에 있음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 개정에 따라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창업·경영 컨설팅, 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을 지원
- 국내외 유사 지원센터의 지원체계, 전문인력 구성, 정부지원금, 지원업무 등은 큰 틀에서 유사
 - 농촌융복합 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일본 6차산업화 지원센터 등 각 지원센터는 총괄기관을 중앙부처, 주관기관은 중앙의 별도 조직을 마련하여 체계성을 갖추고 있음
 - 각 지원센터의 조직구성은 전문인력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전문가(플래너)를 지원센터 업무에 참여시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해역별·시도별 커버리지에 대한 장단점 비교와 해양수산부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시도별로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방향설정 및 세부적인 지침(안) 제시
 - 어촌특화지원센터 추진체계는 해양수산부 총괄기관 중앙지원센터 전담기관으로 이원화하고, 전담기구가 11개 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함
 -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지침(안)은 17장, 58조로 구성하고, 정부가 어촌특화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시하였음



I. 머리말



- 지금까지 어촌개발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열악한 인프라 확충·개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졌음
- 해양수산부는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하향식 지역개발에서 어촌공동체가 스스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지역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이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있음
- 어촌특화사업¹⁾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어촌공동체의 주도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역량부족 문제가 큰 한계점으로 작용하였음
- 어촌공동체가 자기 주도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관련예산 확보 등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2개 시·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 후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한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조직운영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어촌특화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이 연구에서는 2016년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향을 마련하고 어촌특화사업 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지침(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정책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어촌특화사업이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사업을 의미함

II.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1.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필요성

- 정부주도 하향식 지역개발의 문제점과 반성에 따른 민간주도 상향식으로 전환 계기
 - OECD 국가들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투입 등 국가차원의 정책을 펼쳤으나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낙후지역에 대한 격차를 보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전통적인 방식의 지역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음²⁾
 - 지금까지 하향식 개발방식과 정부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내 투자기반을 강화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이 수동적인 행태를 취함으로써 인해 보조금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정책 패러다임에 대하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OECD 국가의 지역균형정책과 한계점은 우리나라 지역정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어촌지역은 심각한 인구유출과 지역침체로 그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정부주도 하향식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역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해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 어촌특화 시범사업(2013~2015년)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시행착오 및 문제점을 개선
 - 어촌특화발전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어촌공동체 스스로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외부전문가들도 어촌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시범사업 5개소 선정('14.7.15)이후 7개월 간 모든 어촌공동체가 스스로 주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외부전문가 조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음

²⁾ 박상우 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p.14

☞ <표 2-1>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어촌특화발전 지원 현황

시범사업 관계자 업무협의 ('14.8.7)	시범사업 워크숍 ('14.11.18 ~ 11.19)	어촌 현장포럼 마을별 2회 ('14.12.12 ~ '15.4.3)
		

- 외부전문가를 통한 워크숍, 현장포럼 등의 일회성 교육과 컨설팅은 아이디어 발굴이나 사업계획 수정 등 단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어촌특화발전사업 확대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담기구 지정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어촌 특화발전 시범마을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전담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음
 - 시범사업에서 나타났던 어촌공동체의 역량 및 의지부족, 어촌특화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문제점과 한계를 현장밀착 지원을 통해 완화·해소해 나감

2.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추진방안

1) 지원대상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지원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2) 자격요건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문인력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그 밖에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보유해야 함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기반시설은 회의실과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건물이나 동일한 층에 위치하여도 무방함

 **〈표 2-2〉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

구 분	기 준
1.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나.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 그 밖에 수산, 가공, 관광, 유통,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컨설팅·상담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 것 가. 지원센터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 나. 1개 이상의 회의실 다. 1개 이상의 교육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2호의 내용을 재작성함

3) 기능과 역할³⁾

- 어촌특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창업경영 컨설팅, 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을 지원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시범사업의 어촌공동체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추진될 어촌특화사업 어촌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업·경영 컨설팅, 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됨

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 내용 참조

- 첫째, 창업 및 컨설팅은 어촌공동체가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기술, 창업 등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현장에서 밀착하여 지원하는 업무임
 -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어촌공동체에서 사업추진 과정중 주요한 의사결정 시 경험과 지식 등 전문성이 부족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간헐적·비정기적인 컨설팅 지원방식으로는 어촌공동체의 부족한 역량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특히, 2014년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거제 해금강마을의 경우, 동백열매 기름을 활용한 동백기름 화장품 개발 등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을 위한 지원이 있었다면 큰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어촌공동체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결과를 중앙정부, 지자체에 제공하는 업무를 지원함
 - 어촌특화사업은 최소 2~3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어촌특화사업 지원의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 셋째,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판매·유통 및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함
 - 어촌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어촌공동체는 대부분 생산이나 일부 저차가공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로와 시장개척에 한계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가 필요함
- 넷째,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어촌공동체를 대상으로 선진사례에 대한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해야 함
 - 어촌특화사업은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교육과 참여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명확한 목표설정과 실천전략에 대한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이 중요함
- 다섯째,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어촌공동체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해야 함
- 마지막으로 국내·외 어촌특화사업 및 어촌자원에 대한 조사·분석과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어촌공동체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해야 함


〈표 2-3〉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업무

구분	사업내용
창업 및 컨설팅	·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 어촌특화사업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관리	· 어촌특화 사업 시행자의 경영 실태 및 사업 추진현황 관리
기타	·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연수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 국내·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 제1호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4) 대안별 추진방식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해역별·시도별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별되며, 대안에 따른 장단점에 따라 정책적 판단이 필요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의 추진방식으로는 지원센터가 해역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해역별 커버리지와 시도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별 커버리지로 대별됨
 - 해역별 커버리지는 동해·서해·남해·제주지역에 4개의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해당 해역의 어촌특화사업을 현장밀착형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운영하는 방식임
 - 시도별 커버리지는 연안 11개 시도별로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어촌특화사업을 담당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정·운영하는 방식임

□ 해역별 커버리지는 광역적인 범위를 담당함으로써 전담조직 지정운영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역할과 기능, 지원센터 공모에 참여가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가 제한적임

- 해역별 커버리지는 동·서·남해·제주 4개 해역에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하기 때문에 중앙에 별도의 전담조직 마련이 불필요해 예산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사업초기 특정지역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어촌특화사업 시범마을과 신규사업 대상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한국어촌어항협회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산·어촌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

- 해역별 커버리지는 향후 정부의 지원예산 증액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시도별 지원센터로 전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어촌특화지원센터가 4개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72개 연안 시군구의 지역을 담당 하기에는 공간적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될 수 있으며, 현장밀착형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광역적인 범위의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방성 측면에서 제약이 큰 단점이 있음
- 시도별 커버리지는 행정구역에 따른 명확한 범위설정과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참여가 가능한 반면, 지원대상, 별도의 전담조직, 전문성 부족한 기관의 참여 등 효율성 측면에서 제약적인 요소가 있음
- 시도별 커버리지는 해역별 커버리지 방식에 비해 시도별로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 ·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현장밀착형 지원이 가능함
 - 시도별 커버리지 추진방식은 시도별 지역발전연구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가 가능해져 진입장벽 없이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에 시도별 커버리지는 사업초기 특정 시도에서만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가 수행 되기 때문에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시도별로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정 · 운영되는 경우 최대 11개소의 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해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며, 수산 · 어촌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해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음
 - 또한, 시도별 커버리지 방식으로 11개 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정 · 운영되었다가 여건변화에 따라 해역별로 전환 시 구조조정 등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

☐ <표 2-4> 어촌특화지원센터 커버리지별 추진방식(안)

구분	해역별 커버리지(Coverage)	시도별 커버리지(Coverage)
권역 구분도		
추진 방식	해역별로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 (해역별 4개소)	시도별로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운영 (연안 11개 시도)
장점	- (지원대상) 모든 시범마을 및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 - (전담조직) 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하는 별도의 전담조직 불필요 - (전문성) 수산·어촌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참여 가능 - (유연성) 지원센터 운영방식 변경(해역별→시도별) 추진이 비교적 용이	- (지원규모) 해역별 운영방식에 비해 안정적인 운영 가능 - (효율성) 현장 밀착형 지원 및 지자체 적극적 참여유도 가능 - (개방성) 지원센터 공모에 참여 가능한 기관 및 단체가 다양
단점	- (지원규모) 지원대상이 광범위하여 역할과 기능 약화 - (효율성) 현장 밀착형 지원 및 지자체 적극적 참여유도 한계 - (개방성) 지원센터 공모에 참여 가능한 기관 및 단체가 제한	- (지원대상) 공모·선정에서 제외된 시도의 사업대상자는 지원기능 수혜 불가 - (전담조직) 최대 11개 지원센터 지정으로 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 필요 - (전문성) 수산·어촌에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나 단체 참여 시 운영 부실화 예상 - (유연성) 지원센터 운영방식 변경(시도별→해역별) 추진이 어려움



III. 국내외 유사사례 및 시사점



1. 개요

- 타 법률 입법사례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센터, 일본 6차산업화 지원센터 검토
 - 어촌특화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과 성격에 해당되는 전담기구를 다양한 입법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음

📖 <표 3-1> 부처별 지원센터의 현황

소관부처	법률명	전담조직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산학연유치 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지원센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도농교류센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센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지원센터
미래창조 과학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이공계인력 중개센터
식품의약품 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각 부처별로 관련 법령과 전담조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도시형 소공인 지원센터,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센터를 살펴보고자 함

2.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⁴⁾

□ 농촌융복합산업의 전담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과 시도 시사가 시도별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이원화 체계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은 경영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지원, 국내·외 연구기관기업 및 대학 간의 연계 지원, 제품의 판매·유통·홍보지원,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과 경영실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시·도지사는 시도별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 기관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토록 함⁵⁾

- 농촌의 자원과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함

- 6차산업화 관련 창업 준비자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육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종합상담 기능

- 지원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관리

- 6차산업화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현장 접목 지원

- 6차산업화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기업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 지원

- 6차산업화를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홍보 및 판매·유통 홍보지원

- 6차산업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경영 모니터링

- 6차산업화 사업자의 경영실태 및 사업 추진현황 관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원 전문기관과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현재 지자체별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9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경북도를 제외하고 모두 시도에서 출자한 지역발전연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농촌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2014 내용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5)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 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다르게 나타남


〈표 3-2〉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현황

지역	주관기관	사업내용
경기	경기농림진흥재단	- 농어업 2,3차 및 6차 산업화 실태조사 - 시군별 순회 상담 및 설명회 - 6차 산업화 모델마을 육성 및 지원
강원	강원발전연구원	- 지역 순회 현장 설명회 - 신규사업 발굴, 창업지원, 컨설팅 - 6차산업 시범모델 공동체 조성 - 6차산업화 기획, 조사, 연구 및 DB구축 - 우수상품 발굴 및 홍보 - 홈페이지 제작 및 정보교류
충북	충북발전연구원	- 지역 순회 정책 설명회 - 6차산업화 기초조사 및 연구 - 시범마을 선정 및 컨설팅 - 성과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 지역 순회 교육 - 신규모델 발굴 및 육성지원 - 우수 경영체 홍보지원 - 로컬푸드 인증제 “미더유” 도입
전북	전북발전연구원	- 현장포럼 운영 - 지역 순회 상담 및 설명회 - 우수상품 및 사례 홍보
전남	전남발전연구원	- 지역 순회 상담 및 설명회 - 모델마을 육성 지원 - 6차산업화 활성화 연구
경북	(재)경북 농민사관학교	- 지역 순회 상담 및 설명회 - 6차산업화 모델 개발 - 6차산업화 컨설팅 -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 6차산업화 경진대회 - 경영 현장 컨설팅 - 상품 기획·판촉전 및 홍보 - 창의형 인재 양성
경남	경남발전연구원	- 지역 순회 워크숍 - 잠재모델 파악 -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현장 컨설팅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 지역 순회 설명회 및 컨설팅 - 6차산업 활성화 방안 포럼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농촌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2014, p.24 재작성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향후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 운영을 공모방식 도입 통해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별도로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신청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로는 농업기술원, 시도 지역발전연구원, 6차산업화 협의회, 농업관련 전문 교육기관 등이며, 중간 지원조직의 위탁기간은 3년임
- 신청하고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단체를 심사함
- 선정기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간지원 실적, 6차산업화 관련 모니터링 및 컨설팅, 중간지원조직 사업 계획서의 적절성, 전문인력 구성과 연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관심도로 나뉨
- 지방자치단체는 심사결과에 따라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선정

☞ <표 3-3>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6차산업화 관련 중간지원 사업 실적	- 전년도 연구 · 조사 실적 - 전년도 사업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적 - 전년도 교육, 홍보, 행사 실적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 중간지원조직의 비전, 목표, 전략 수립의 적정성 - 비전 · 목표와 세부사업과의 일치성 -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창의성
전문인력 확보와 연계	- 조직 내 전문인력 확보 - 지역 내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관련 전문가 연계 · 협력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관심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지원 체계 -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센터 협력 체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농촌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2014, p.67 재작성

3. 소상공인지원센터⁶⁾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⁷⁾ 집적지구⁸⁾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교육사업, 홍보사업, 컨설팅사업, 관리·기획 운영으로 대별되며,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경영·기술 역량 배양, 상호 정보교류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
 - 집적지내 소공인 브랜드가치제고사업, 제품 판로확대와 기술 제품 및 집적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
 - 소상공인의 경영·제품·기술 등에 관한 컨설팅 진행
 - 공동장비 및 공동사업(경진대회, 전시장) 관리 운영 및 업종별·직접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 <표 3-4>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현황(2015년)

지역	업종	집적지	지역	업종	직접지
서울	의류봉제	종로구 창신동	인천	기계장비부품	동구 송림동
		중구 신당동 일대	부산	의류봉제	동구 범일동
		성북구 장위동		귀금속	부산진구 범천동
	수제화	성동구 성수동		가죽, 가방 및 신발	부산진구 범천4동
	귀금속	종로구 종로 1, 2, 3, 4동	대전	기타기계 및 장비	신일동, 용산동, 탑립동, 상서동, 평촌동
	인쇄	중구 쌍림동		인쇄	동구 정동
	기계금속	영등포구 문래동	광주	인쇄	동구 서남동
경기	식료품(제과제빵)	중구 상대원동		의류봉제(한복)	동구 충장로
	기타기계 및 장비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충남	식료품(인삼)	금산군 금산읍
	자동차부품	화성시 팔탄면	전북	금속가공	덕진구 팔복동 일대
대구	귀금속	중구 성내동	전남	금속가공	광양시 옥곡면 일대
	광학(안경테)	북구 노원동, 침산동		비금속 광물 제품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www.semas.or.kr/web/SUP01/SUP0110.kmdc)하여 재작성, 검색일 2015.12.16.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5년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2차 모집공고 및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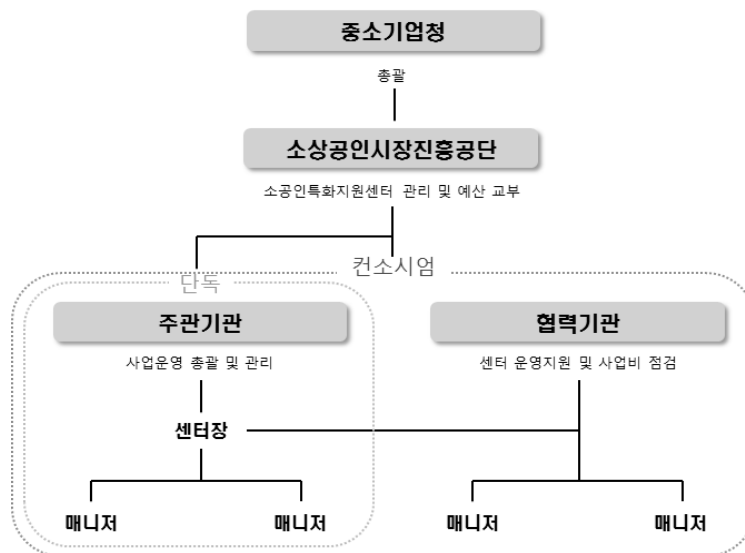
7) 제조업(중분류 19개)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8) 동일 업종의 도시형소상공인이 50(특별·광역시)개, 40(시)개, 20(군)개 이상 분포한 읍·면·동 지역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조직구성은 중소기업청이 총괄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담기관이 되어 각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

- 중소기업청은 총괄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할을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각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교부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를 담당함
- 현재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각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매니저 등 3인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예산은 정부지원금(70% 이내)과 대응출자금(30%이상)로 구성되며, 지원금의 60% 이상은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 운영

📁 <그림 3-1>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조직구성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Idx=&schCon=0&schStr=특화지원&page=1&b_idx=21809&pNm=BOA0101&eventMode=), 『2015년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2차 모집 공고 참조하여 작성, 검색일 2015.12.16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절차에 따라 매년 설치 · 운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유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서를 제출

- 지원가능한 기관으로는 주관기관은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며, 협력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대학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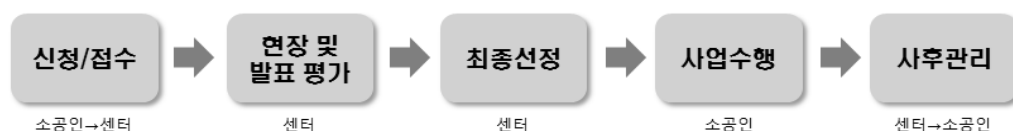
📁 <표 3-5>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신청 유형

유형	신청대상	역할
주관기관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대학	사업운영 총괄 및 관리
협력기관	지방자치단체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대학 등	센터 운영지원(재정 등) 및 사업비점검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Idx=&schCon=0&schStr=특화지원&page=1&b_idx=21809&pNm=BOA0101&eventMode=), 『2015년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2차 모집 공고 내용을 재구성, 검색일 2016.12.16

- 신청요건으로는 소공인 집적지 존재 및 제조업(중분류19개)에 해당하여야 하며, 센터 전용사무실 33㎡ 이상(필수) 및 사업공간(교육장 등), 센터장 및 매니저 최소 3인 이상의 인력, 최소 1억 원 이상 대응출자금(현금 및 현물 비율 제한 없음)을 갖추어야 함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평가절차는 1차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통과한 기관에 대하여 2차 발표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에서 소상공인 집적지 여부 및 지원필요성, 사무실 확보 및 부합 여부 등이 있으며 발표평가 항목으로는 역량 및 의지, 사업추진 계획서의 적정성 등이 있음
-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비를 구성하고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멘토링단을 구성하여 각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멘토를 지정하여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장점검 등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 등을 통하여 연장심의를 거쳐 차년도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함

📁 <그림 3-2>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추진절차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Idx=&schCon=0&schStr=특화지원&page=1&b_idx=21809&pNm=BOA0101&eventMode=), 『2015년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2차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 2015.12.16

4. 일본 6차산업화 지원센터⁹⁾

□ 일본 6차산업화 지원센터는 농림어업자의 6차산업화 종합사업계획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향후 체계적인 사업실행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수산성과 수산청은 2010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따른 신(新)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 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함
- 6차산업화는 일자리와 농림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젊은 사람이 마을에 정착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어업생산, 가공 판매의 일체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6차산업화 지원센터는 연수회 개최, 플래너 파견 및 선정, 사업계획 지원, 박람회 개최 등 현장밀착형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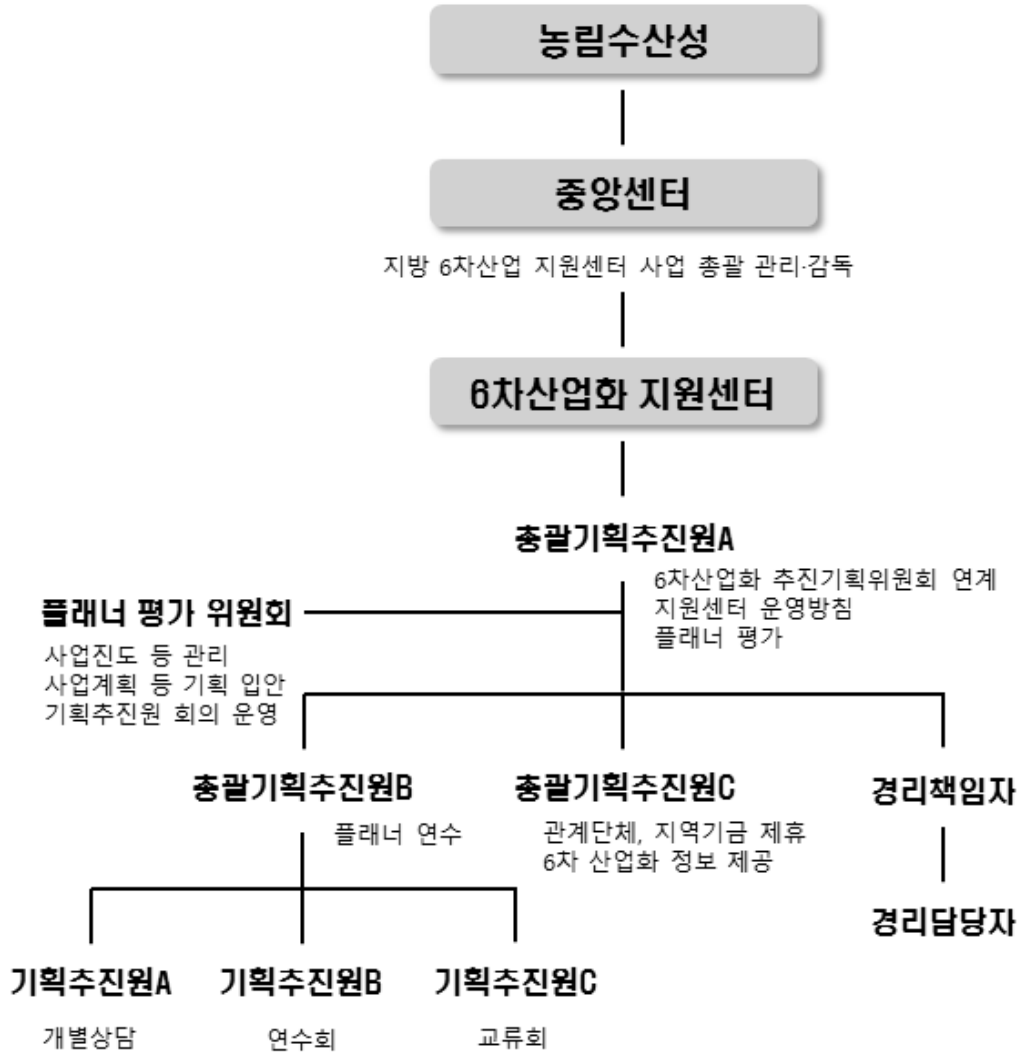
- 지원센터는 농림어업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연수회를 개최하여 6차산업화와 사업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지원센터에서 6차산업화 사업자별로 개별 상담회를 통하여 컨설팅 업무를 지원함
- 지원센터는 6차산업화 신청 및 사업계획서 수립 등의 지원을 위하여 6차산업화 전문가인 플래너를 현장에 파견하여 농림어업인에게 필요한 농수산 가공품 생산에 대한 가공지식 및 위생관련 지식 등을 지원
- 특히, 6차산업화 추진을 희망하는 농림어업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업계획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며, 사업계획서 승인 후 사업 수행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함
- 지원센터는 생산자와 가공, 유통업자와의 매칭을 위한 경영체 간 박람회를 개최하여 가공품 등을 전시하고 강연 등을 지원함

□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조직은 내부조직과 외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

- 내부조직은 총괄기획추진원, 기획추진원 및 경리로 구성
- 외부조직은 6차산업화 전문가들을 플래너로 선발하고 6차산업 관련 조직들을 협력 기관으로 구성함

9) 社団法人 中小企業診断協会, 「平成24年度「調査・研究事業」6次産業化推進のための効果的な6次産業化サポートセンターの活用と運営 報告書」, 2013 및 6次産業化推進のための効果的な6次産業化サポートセンターの活用と運営 (vegetable.alic.go.jp), 검색일 2015. 12. 19 내용 참조

◀ 그림 3-3 ▶ 일본 6차산업화 지원센터 조직구성



자료 : 社団法人 中小企業診断協会, 「平成24年度「調査・研究事業」6次産業化推進のための効果的な6次産業化サポートセンターの活用と運営 報告書」, 2013, p.71 재작성

5. 시사점

- 유사사례에서 살펴본 지원센터는 모두 중앙부처가 총괄기관을 맡고 별도의 전담기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 전담기관(중앙)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시도)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 전담기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이 총괄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일본 6차산업화 지원센터는 농림수산성과 수산청이 총괄기관, 중앙센터가 각 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맡고 있음
- 지원센터의 규모와 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9개소, 소상공인 지원센터 24개소, 6차 산업화 지원센터 106개소 등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각 지원센터의 조직구성은 전문인력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민간전문가(플래너)를 지원센터 업무에 참여시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플래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교수를 활용하는 경우와 반대로 지원자의 자원 봉사를 유도하는 플래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 각 지원센터의 사업비는 모두 정부지원금을 위주로 보조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며, 그 지원 규모도 업무의 영역과 범위에 따라 다름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국비 지원을 최대 70%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30% 범위 내에서 대응출자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대상자가 창업, 기술연구, 정보 및 홍보 등 취약한 영역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음

<표 3-6> 유사사례 지원센터의 비교

구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¹⁰⁾	소상공인지원센터 ¹¹⁾	일본 6차산업화 지원센터 ¹²⁾
총괄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업성 (수산청)
전담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앙센터
지원 센터	9개소	24개소	106개소 ¹³⁾
조직 구성	전문인력 1명 이상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이상	(총괄)기획추진원 플래너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70%이내(350백만원), 대응출자금 30%이상(100백만원 이상)	정부지원금
사업 내용	- DB구축 - 창업·보육 및 경영·컨설팅 - 전문가 관리 - 기술 연구·개발 - 산·학·연 연계 - 판매·유통 및 홍보 - 교육·연수 - 사업 및 경영실태 관리	- 교육사업 - 홍보사업 - 컨설팅사업 - 관리·기획 운영	- 연수회 개최 - 플래너 선정 및 파견 - 사업 계획 책정 지원 - 박람회 개최 - 인재육성지원 - 기술 대책 사업 - 정보제공
지원 대상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	19개 제조업 소공인	6차산업화 희망자 및 시행자
법적 근거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 어업자 등에 따른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 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10)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농촌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2014 참조

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검색일 2015.12.16 및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침 참조

12) 社団法人 中小企業診断協会, 「平成24年度「調査・研究事業」6次産業化推進のための効果的な6次産業化サポートセンターの活用と運営 報告書」, 2013

13) 해양수산부,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연구」, 2015, p.125 참조

IV.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관리 방향



1.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추진체계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총괄기관, 전담기관으로 이원화 체계를 마련하고, 시도별로 지원센터를 지정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총괄 기관으로 하며, 계획 수립, 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사업 예산 확보를 담당함
 - 전담기관은 11개 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중앙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사업 세부 계획 수립, 시도별 지원센터의 선정,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5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원센터의 선정평가 및 연장심의,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검토, 제재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지원센터로 지정되는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함

☞ <표 4-1> 어촌특화지원센터 추진체계

구분	주요업무
총괄기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 사업 예산확보
전담기관	- 사업 세부계획의 수립 - 주관기관 평가·선정(취소) - 주관기관과 협약체결·변경승인·협약취소 - 정부지원금 교부 및 총사업비 집행관리 - 총사업비 정산 및 정부지원금 회수 - 지원센터 성과평가 및 연장심의 - 지원센터 성과관리,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관기관 (협력기관)	- 총괄기관과 계약체결 -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지원센터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 - 각종 현황·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 - 사업종료 후 2년 간 매출액, 고용 등 사업성과 관리 - 컨설턴트 및 전문강사의 구성 및 운영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공고, 평가, 사업실행, 성과평가, 연장심의 프로세스에 따라 매년 추진

❏ <표 4-2> 어촌특화지원센터 추진절차

단 계	주요내용
사업공고 (해양수산부)	·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공모
↓	
신청접수 (신청기관 → 해양수산부)	· 센터 운영계획이 있는 신청기관은 해수부에 신청서, 제안서, 증빙서류 등 제출(우편 및 방문)
↓	
선정평가 (해양수산부 → 신청기관)	·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	
최종 확정 및 결과통고 (해양수산부 → 신청기관)	·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하여 선정기관 최종 확정 및 선정 여부 서면통보
↓	
지정체결 (해양수산부 ↔ 선정기관)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 제출 · 선정기관의 인력 등을 위해 수행지침 등 사업 안내
↓	
지원금 교부 (해양수산부 → 지정기관)	· 정부지원금 교부
↓	
사업실행 (지정기관)	· 지정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지정기관 → 해양수산부)	· 지정기관은 사업진행에 따라 중간보고 제출 · 해수부는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최종완료 보고 (지정기관 → 해양수산부)	· 지정기관은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서와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성과평가 (해양수산부)	· 지정기관의 성과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
↓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지정기관 → 해양수산부)	· 사업비 정산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잔액 또는 환수 대상 사업비 반납
↓	
연장심의 (해양수산부)	· 중간·최종보고,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사하여 차년도 연장지원 여부 결정

2.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신청자격 및 유형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기관자격, 시설요건, 인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격 부여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신청자격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4-3〉 어촌특화지원센터 신청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요건 ① (기관요건)	○ (주관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3.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지원·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협력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 등
요건 ② (시설요건)	○ (필수) 1. 센터 전용사무실 2. 1개 이상의 회의실 3. 1개 이상의 교육실 * 회의실 및 교육실은 센터 전용사무실과 같은 동일 건물(층) 안에 있지 않아도 무방
요건 ③ (인적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인 이상의 센터인력 지정·운용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2.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그 밖에 수산, 가공, 유통, 관광,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상담·컨설팅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6%B4%EC%B4%8C%ED%8A%B9%ED%99%94%EB%B0%9C%EC%A0%84%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undefined>),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별표1의2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검색일 2015.12.8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주관기관 단독 또는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해 협력적 업무 수행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주관기관의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업무가 가능함
- 주관기관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될 수 있음

❏ <표 4-4>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신청유형

신청유형		지원대상	주요기능
단독	주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사업운영 총괄
컨소시엄	주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협력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경제 · 산업 관련 산하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센터 운영지원 (지원센터 업무의 일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6%B4%EC%B4%8C%ED%8A%B9%ED%99%94%EB%B0%9C%EC%A0%84%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undefined>),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함, 검색일 2015.12.8

3.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선정평가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선정평가는 전담기관 주도로 평가항목, 방법 등 세부계획 수립 통해 추진
 - 전담기관은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선정·평가에 앞서 총괄기관과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센터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함
 - 평가항목은 전문인력 확보 여부, 필수시설 확보 여부, 국가 보조사업 수행경험 등 정량적인 평가와 지원센터 운영계획 등 정성적인 평가로 구성해야 함
- 전담기구는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
 - 전담기구는 어촌특화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관련성이 없는 전문가로 한정하여 구성하고, 행정, 경영, 수산, 어촌개발 등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4.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사업수행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를 현장밀착형으로 지원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의 경영, 기술, 창업 등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특화어촌을 위하여 컨설팅을 최소 1개소 이상 수행하여야 함
 - 센터장은 컨설턴트 및 특화어촌 모집·선발계획, 지원방법, 지원일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의 업종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특화어촌의 사업추진 현황 및 경영실태 등을 지원하여야 함

 **〈표 4-5〉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업무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창업 및 컨설팅	·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1개 이상
연구개발	·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1개 이상
관리	· 어촌특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 실태 관리	1개 이상
기타	·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연수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 국내·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1개 이상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6%B4%EC%B4%8C%ED%8A%B9%ED%99%94%EB%B0%9C%EC%A0%84%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undefined>),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 2제2항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을 참조하여 재정리함, 검색일 2015.12.8

□ 어촌특화지원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사업비로 구성 및 관리

- 총사업비는 직접경비 60%와 간접경비40%로 구성하고, 직접경비는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창업 및 경영컨설팅비, 기술연구개발비,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비, 기타 사업비 등으로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로 구성하여야 함
- 간접경비는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운영비로서 인건비, 센터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로 구성하여야 함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당해연도의 사업 종료 시 사업비 사용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괄기관과 전담기관 제출하여야 함

❏ <표 4-6>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사업비 구성 및 내용(안)

구분	항목	세부내용
사업비	직접성 경비	창업 및 경영컨설팅비
		창업 및 경영컨설팅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기술 연구개발비
		기술 연구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간접성 경비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비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타 사업비
		해양수산부에서 추가로 지시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성 경비
	인건비	센터인력에 대한 인건비
	센터운영비	홍보비, 국내여비, 운영수당, 기타 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등

5.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인력 및 업무구성¹⁴⁾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인력구성은 센터장, 전문인력 1인이상, 기타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

- 어촌특화지원센터장은 상근(전임)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근의 경우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인력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30조의 2제 1항제 2호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한정하고, 교육 및 컨설팅, 기술 연구개발, 판매홍보 분야를 대상으로 함
- 보조인력은 센터운영시 필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 관리 및 운영, 협력 체계 및 인력풀 구축 등의 업무에 활용

❏ <표 4-7> 어촌특화지원센터 인력 및 업무(안)

조직	업무	총원
센터장	센터 업무 총괄	1
센터 관리 · 운영	센터 운영 및 사업관리	1
교육 · 컨설팅	창업 · 경영 관련 교육 · 컨설팅 지원	1
기술 연구 · 개발	6차 산업화 기술 연구 · 개발 지원	1
판매 · 홍보	6차 산업화 상품 판매 · 홍보 지원	1
협력체계 및 인력풀 구축	산 · 학 · 연 협력체계 구축 및 인력풀 구축	1
합계		6

¹⁴⁾ 박상우 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참조

-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6인으로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산해 보면 약 17.8억 원으로 나타났음¹⁵⁾

☞ <표 4-8> 어촌특화지원센터 개소당 인건비 추정(안)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인력수(명)	6	6	6	6	6	-
연간 1인당 인건비(천원)	55,768	57,441	59,165	60,940	62,768	296,082
소요비용(천원)	334,610	344,648	354,988	365,637	376,606	1,776,490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경상운영비는 시설건물관리기준¹⁶⁾에 따라 인건비 대비 34.6%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2016년 기준 개소당 약 1.2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2020년까지는 약 6.1억 원으로 나타났음

☞ <표 4-9> 어촌특화지원센터 1개소당 경상운영비 추정(안)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경상운영비(천원)	115,775	119,248	122,826	126,511	130,306	614,665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사무실 및 교육실을 위한 임대료는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m²당 월평균 48,427원¹⁷⁾이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1인당 평균사무공간 69.04m²¹⁸⁾를 적용하면 276.16m²로 연간 160,483천 원으로 나타났음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사무실 및 교육실 임대료는 2016년 기준 1.6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5년 간 적용하면 약 9.6억 원으로 추산되었음

☞ <표 4-10> 어촌특화지원센터 개소당 임대료 추정(안)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연간 임차비(천원)	160,483	174,926	190,670	207,830	226,535	960,444

* 임대료 인상률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한액 9%적용

15)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2015년 인건비(고급) 기준 및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0% 적용

16)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2006, p.138

17) '2014년 세계 주요 오피스 시장(Office Space Across the World)' 오피스 임대료(economy.hnakooki.com) 재인용

18) 박상우 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p65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업무별 사업비는 어촌특화사업 시범마을 10개를 기준으로 개소 당 2.5회씩 각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표 4-11>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업무별 사업비 추정(안)

항목	내용	합계
마케팅사업비	홍보비 : $2,000,000\text{원} \times 2.5\text{회} = 5,000,000\text{원}$ 마케팅지원비 : $3,000,000\text{원} \times 2.5\text{회} = 7,500,000\text{원}$	12,500천원
컨설팅지원비	홍보비 : $2,000,000\text{원} \times 2.5\text{회} = 5,000,000\text{원}$ 컨설팅지원비 : $3,000,000\text{원} \times 2.5\text{회} = 7,500,000\text{원}$	12,500천원
교육사업비	이론교육 : $20,000,000\text{원} \times 2.5\text{회} = 50,000,000\text{원}$ 실습교육 : $25,000,000\text{원} \times 2.5\text{회} = 62,500,000\text{원}$	112,500천원
연구개발비	이론교육 : $20,000,000\text{원} \times 2.5\text{회} = 50,000,000\text{원}$ 실습교육 : $25,000,000\text{원} \times 2.5\text{회} = 62,500,000\text{원}$	112,500천원
기타사업비	홍보비 : $2,000,000\text{원} \times 2.5\text{회} = 5,000,000\text{원}$ 기타사업비 : $3,000,000\text{원} \times 2.5\text{회} = 7,500,000\text{원}$	12,500천원
합계		262,500천원

V.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지침(안)¹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타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²⁰⁾.

1. “어촌”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특화어촌”이란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또는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인특화지원센터”라 함은 어촌특화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7. “총괄기관”이라 함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¹⁹⁾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²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8. “전담기관”이라 함은 총괄기관의 장이 센터에 대한 평가·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으로서 소공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라 함은 센터의 운영을 주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협력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운영기관”이라 함은 센터를 운영하는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을 말한다.
12. “심의위원회”라 함은 신규 센터 신청기관의 선정평가, 협약내용 변경사항,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3. “센터장”이라 함은 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로서 센터를 대표하는 총괄책임자이며 센터를 총괄 관리·운영하는 상근 또는 비상근인력을 말한다.
14. “총사업비”라 함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경비의 총액으로서 정부지원금으로 구성한다.
15.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총사업비 중 정부가 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16. “선정평가”라 함은 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하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이루어진다.
17. “성과평가”라 함은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센터 운영실적 및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8. “연장심의”라 함은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차년도 협약체결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19. “사업기간”이라 함은 지정 시작일로부터 지정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 “현장점검”이라 함은 전담기관에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정도, 사업비 집행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화사업”이라 함은 소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① 총괄기관은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총괄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3. 사업 예산확보

제5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중앙지원센터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세부계획의 수립
2. 주관기관 평가·선정·선정취소
3. 운영기관과 협약체결·변경승인·협약취소
4. 정부지원금 교부 및 총사업비 집행관리
5. 총사업비 정산 및 정부지원금 회수
6. 센터 성과평가 및 연장심의
7. 센터 성과관리,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8.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선정된 기관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기관과의 계약체결
2.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3.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
4. 각종 현황·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
5. 사업종료 후 2년 간 매출액, 고용 등 사업성과 관리
6. 컨설턴트 및 전문강사의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기관) ① 협력기관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주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② 협력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지원 및 사업비 집행점검
2. 그 밖에 주관기관에 준하는 역할

제8조(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간사는 총괄기관 사업 담당자로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선정평가 및 연장심의
 2. 센터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조정 · 확정
 3. 센터 제재조치에 따른 제재수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여부
 4. 센터 평가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심의절차, 심의수당 등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과정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상근(전임)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근의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센터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경영관리 · 사업수행 감독 · 보고서 제출 등 센터 전반의 관리 · 운영
 2. 센터 인력 관리
 3. 센터 운영성과의 활용, 관리 및 보고
 4. 어촌특화사업자 지원 정책 · 제도 등에 대한 안내 · 상담
 5. 사업비의 총괄 관리
 6.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해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문인력)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2.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그 밖에 수산, 가공, 유통, 관광,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 · 상담 · 컨설팅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인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특화사업 참여 희망자 파악 및 정보제공
2. 어촌특화사업자 지원 정책·제도 등에 대한 안내·상담
3. 사업의 원활한 진행
4. 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의 수행
5. 그 밖에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자료의 작성 및 보고

제11조(자문협의회) ① 주관기관의 장은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협의회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언
 2.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
 3. 그 밖에 주관기관의 장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자문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추진절차

☞ <표 5-1> 추진절차

단 계	단계별 주요내용
사업공고 (전담기관)	· 홈페이지 공모(총괄기관,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
↓	
신청접수 (신청기관→전담기관)	· 센터운영 계획이 있는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에 ① 신청서 ② 제안서 ③ 증빙서류 등 제출(우편 및 방문)
↓	
선정평가 (전담기관 → 신청기관)	· 전담기관은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최종 확정 및 결과통보 (전담기관→신청기관)	·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 및 선정여부를 총괄기관 및 신청기관에 서면통보
↓	
협약체결 (전담기관→운영기관)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제출 등 계약준비 · 계약준비 이후 총괄기관과 운영기관(주관 및 협력기관) 계약체결 · 사업설명회 개최(센터인력 등을 위해 실행계획, 수행지침 등 사업안내)
↓	
지원금 교부 (전담기관→주관기관)	·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교부
↓	
사업실행 (운영기관)	· 각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일정 등에 따라 사업 추진(협약서, 수행지침 등 준수)
↓	
현장점검 (전담기관)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불시점검 실시
↓	
중간보고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주관기관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중간실적 보고
↓	
최종완료 보고 (주관기관→전담기관)	· 주관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제출
↓	
성과평가	· 주관기관의 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
↓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 사업비 정산 및 정산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환수 등 조치
↓	
연장심의	· 지원센터별 사업실적,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사하여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제4장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제12조(사업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센터를 신규로 모집하거나 연장지원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사업과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3. 기타 선정기준, 평가 절차 등

제13조(센터 운영방식) ① 센터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 1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신청접수)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²¹⁾.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전담조직 현황
4. 시설현황
5.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6.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7. 건축물 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8. 기타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신청자격)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1호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²¹⁾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6%B4%EC%B4%8C%ED%8A%B9%ED%99%94%EB%B0%9C%EC%A0%84%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undefined>)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검색일 2015.12.8

3.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지원 ·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② 신청기관은 아래 <표 5-2>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표 5-2 어촌특화지원센터 신청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요건 ① (기관요건)	○ (주관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3.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지원 · 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협력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 등
요건 ② (시설요건)	○ (필수) 1. 센터 전용사무실 2. 1개 이상의 회의실 3. 1개 이상의 교육실 * 회의실 및 교육실은 센터 전용사무실과 같은 동일 건물(층) 안에 있지 않아도 무방
요건 ③ (인적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인 이상의 센터인력 지정 · 운용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2.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그 밖에 수산, 가공, 유통, 관광,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 · 상담 · 컨설팅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6%B4%EC%B4%8C%ED%8A%B9%ED%99%94%EB%B0%9C%EC%A0%84%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undefined>),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별표1의2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검색일 2015.12.8

- 제16조(신청유형)** ① 신청기관은 주관기관 단독 또는 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할 수 있다.
- ② 협력기관으로는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경제 · 산업 관련 산하기관, 대학 등이 가능하다.
- ③ 지사(지점)가 있는 주관기관은 본사(본점)를 신청기관으로 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5-3〉 어촌특화지원센터 신청유형**

신청유형		지원대상	주요기능
단독	주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사업운영 총괄 및 관리
컨소 시업	주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협력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경제·산업 관련 산하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센터 운영지원 및 사업비 집행점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6%B4%EC%B4%8C%ED%8A%B9%ED%99%94%EB%B0%9C%EC%A0%84%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undefined>),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함, 검색일 2015.12.8

- 제17조(신청서 확인 및 제외)** ① 전담기관의 장은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지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지정 신청서가 사업의 기본 목적이나 공고된 사업목표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제출된 지정 신청서의 사업내용이 중복성(기 지원 등)이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전례가 있는 경우(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당해연도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6.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관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

제18조(지원규모)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센터의 개소시기를 감안하여 <표 5-4>와 같이 정부지원금의 지원규모를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단, 전담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소시기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표 5-4〉 개소시기별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개소시기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	협약체결 후 90일 이내	협약체결 후 90일 이상
지원비율	100%	90%	80%	지정취소

제19조(지원기간) 센터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연장심의를 실시하여 심의결과에 따른 차년도 지원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서류의 평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센터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요청한 서류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의 확인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보완기일을 지정하여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기관이 지정 기일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자격 및 사업계획, 사업비 구성 등이 동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선정된 이후라도 평가대상 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장 선정평가

제21조(선정규모) 신규 센터 선정규모 및 선정지역 등은 지역수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항목, 방법, 일정 등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기관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서면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센터의 전문인력 확보여부
2. 센터사무실과 시설 확보 및 부합여부
3. 그 밖에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표 5-5>에 따른 사항을 평가한다.

☐ <표 5-5>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심사기준(안)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고	
합 계					100		
① 계량평가							
업무기록	○ 정부지자체 위탁업무 수행 경험				15		
	5건 이상	3건~4건	1건~2건	0건			
	15점	10점	5점	0점			
	○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5		
2건 이상	1건	없음					
	5점	2점	0점				
참여인력	○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10		
	4인 이상	3인	2인	1인			
	10점	7점	5점	3점			
	○ 사업책임자의 경력 ²²⁾				10		
	7년 이상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10점	8점	6점	4점			2점
①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②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③ 수산, 가공, 유통, 관광,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상담·컨설팅 등 관련 분야 경력자 ④ 대기업, 중소기업의 인사·노무·회계·마케팅·재무 등 분야 경력자							

② 비계량평가					평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전략 및 목표	20	20	16	12	8	4		
	○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 이해도	5	5	4	3	2	1		
	○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수행 방식의 적정성	15	15	12	9	6	3		
	○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수행 일정의 적정성	5	5	4	3	2	1		
	○ 예산운용의 적정성	5	5	4	3	2	1		

²²⁾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2호의 별표1의2에 따른 전문인력 참조

- 제23조(최종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최종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총괄기관의 장은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24조(사업비 등 사업계획 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추진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사업 추진여부,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비는 신청기관이 신청한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시 신청한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사업기간이 축소 · 조정된 경우에도 당초 신청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협약체결

- 제25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주관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자체심의 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서에 따라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단, 협력기관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양자간 협약서를 작성한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한 내에 계약서류 일체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제출한 서류 일체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다.
- ③ 지정기간은 1년 단위이며,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1. 지정기간 시작일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
 2.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표 5-6〉 협약서류 및 작성방법

No	서 류 명	작 성 방 법	비고
1	협약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에 체결	원본
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 전담기관, 심의결과 보완내용 반영	원본
3	주관기관과 협력기관간의 계약서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에 체결 · 원본은 주관기관/협력기관이 각 1부씩 보관 * 협력기관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사본
4	주관기관 통장사본	· 주관기관 명의로 신규 통장 개설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입금·관리	사본
5	사용인감계	· 계좌 인감 날인(협력기관 및 주관기관) · 인감증명서는 계약 전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원본
6	위임장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제출	원본
7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날인	원본
8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주관기관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원본
9	기타	· 상기서류 외 총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27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세부 사업목표 등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표 5-7>의 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협약의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표 5-7〉 협약 변경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변경사항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명의 공문과 사업계획 변경요청서 · 관련 증빙서류
기관명칭, 주소 변경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센터인력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	· 변경 내역(사유서 포함)
사업비 전용계좌변경	· 변경계좌 사본 ·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타 변경내용	·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

② 변경승인 요청기한은 당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협약의 변경승인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협약의 변경승인 요청이 접수된 경우 타당성을 확인하고 변경내용이 센터운영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⑤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주관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목표 등 주요 변경사항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기관명칭, 기관주소 등의 변경사항은 총괄기관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센터인력(센터장 포함)의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등 주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센터인력의 채용 시 주관기관의 장은 채용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부정채용 등의 방지를 위해 채용면접 시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가 배석할 수 있다.
 5.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비목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 변경승인 신청 처리 기준에 따른다.
 6.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승인 절차 없이 진행된 경우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정부지원금 요청 및 교부

제28조(정부지원금 요청)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이하 지참상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2. 정부지원금 신청서 1부
 3.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 1부
 4. 법인카드 사용 신고서 1부
 5.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요청 시, 확정된 정부지원금 총액의 100%까지 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정부지원금 교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단, 전담기관의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발생 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제출서류의 검토, 기타 문제될 만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주관기관에 정부지원금을 교부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의 경영여건의 악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표 5-8〉 정부지원금 지급시기 및 비율**

구 분	내 용
지급요청	·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비율	· 정부지원금의 100% 이내
지급시기	· 지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8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제30조(사업비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총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계좌 및 계정(計定)을 개설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총사업비를 지침에 따라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사용에 대한 점검·정산의 책임을 갖는다.
- ③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주관기관의 장은 비목별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용금액이 비목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업비 집행을 중단(사용정지)하고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⑥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작성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전용계좌와 연동한 법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최대 3개까지 발급받아 법인카드 사용 신고서에 의거, 전담기관에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카드지출의 경우 전담기관에 신고된 카드로 사용한 지출내역만 사업비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법인명의의 체크카드는 클린카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없다.

1. 일반유흥주점업(56212)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 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
3. 위생업종 : 사우나,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4.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사교춤, 당구장, 헬스클럽, 스키장
5.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6.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7. 기타 업무와 무관하거나 실행예산의 목적을 이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카드사용은 사업비 편성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경비 집행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2.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등) 카드를 사용한 경우(단, 정당한 사유로 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사유서 첨부)
4. 카드전표의 서명이 기관약칭 및 사용자의 실명으로 병기되어 있지 않거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카드전표를 카드사용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단, 해외출장 등으로 7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귀임 즉시 처리하되, 사유서 첨부)

④ 사업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지정기간(협약체결일~협약종료일)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정기간 이전 또는 이후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도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한다.

1. 최종보고서 제본비 등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정연장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승인한 간접성경비(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사업비 집행액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하나, 연장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사업비의 사용 시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한 기안서, 지출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지급확인서, 검수확인서,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지출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각 비목별로 회계증빙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⑦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서류 금액, 계좌입출내역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⑧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한 사업계획서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⑨ 사업비 집행에 대한 증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또는 지정된 사업비 지출 카드 영수증으로 증빙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⑩ 물품구매의 경우 50만 원 이상 집행 시 2개 이상 업체로부터 비교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⑪ 1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위탁용역 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공개입찰을 하고, 공정한 선정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고내용, 접수기관, 선정절차 등)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물품구매 및 위탁용역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⑫ 1천만 원 미만의 물품구매 및 위탁용역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단, 수의계약 진행이후 전담기관에 월말 사유서를 일괄 제출해야하며, 전담기관은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필요시 보완 또는 제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센터 사업수행

제32조(센터 운영) ① 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사무실에 상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²³⁾.

-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 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²³⁾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2항 내용 참조

☐ <표 5-9>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

구분	사업내용	비고
창업 및 컨설팅	·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1개 이상
연구개발	·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1개 이상
관리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 실태 관리	1개 이상
기타	·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 · 유통 및 홍보 지원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 · 연수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 · 외 연구기관 · 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 국내 · 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 · 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1개 이상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6%B4%EC%B4%8C%ED%8A%B9%ED%99%94%EB%B0%9C%EC%A0%84%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undefined>),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 제2항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을 참조하여 재정리, 검색일 15.12.8

제33조(창업 및 컨설팅) ① 주관기관의 장은 어촌의 경영 · 기술 · 창업 등에 관한 애로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특화어촌을 위하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컨설턴트 및 특화어촌 모집·선발계획, 지원방법, 지원일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창업 및 컨설팅 목적에 적합한 대상은 어촌공동체(어촌특화사업 예비사업자)이어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 ① 주관기관의 장은 어촌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 ·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과 경영실태의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지원한 특화어촌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과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기타) ① 기타사업은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 · 유통 및 홍보 지원
2.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 · 연수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 · 외 연구기관 · 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4. 국내 · 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 · 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제10장 사업비의 조성 및 구성

제37조(총사업비의 조성)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100%)으로 조성한다.

제38조(정부지원금) ① 정부지원금은 사업을 위해 주관기관에 지원하는 현금으로, 전담기관의 장은 정해진 사업비 집행기준을 주관기관에 안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총사업비에 대하여 직접성경비(60% 이상)와 간접성경비(40% 이내)로 구성한다.

제39조(사업비의 구성) ① 사업비는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접성경비와 간접성경비로 구성한다.

② 직접성경비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창업 및 경영컨설팅비, 기술 연구개발비,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비, 기타사업비로 구성한다.

③ 간접성경비는 인건비, 센터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구성한다.

☞ <표 5-10> 사업비의 구성

구 분		항	목
사 업 비	직 접 성 경 비	① 창업 및 경영컨설팅비	· 창업 및 경영컨설팅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성 경비
		② 기술 연구개발비	· 기술 연구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성 경비
		③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비	·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에 필요한 직접성 경비
		④ 기타사업비	· 총괄기관에서 추가로 지시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성 경비
	간 접 성 경 비	⑤ 인건비	· 센터인력에 대한 인건비 * 4대 보험, 퇴직급여충당금, 각종수당 등 제반 비용 포함
		⑥ 센터운영비	· 홍보비, 국내여비, 운영수당, 기타 운영비
		⑦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등

제40조(사업비 산정기준) 이 지침의 <표 5-11> 사업비 세부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 <표 5-11> 사업비의 구성

사업비 세부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

1. 정부지원금 직/간접성경비

구 분	편성기준
① 직접성경비	· 총사업비의 60%이상
② 간접성경비	· 총사업비의 40%이내(인건비, 지원센터운영비, 업무추진비)

2. 창업 및 경영컨설팅비

목	편성기준
컨설팅지원비	·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에 사전 승인 필요 · (컨설턴트 수임료) 1시간당 10만 원 이내 편성 * 단, 컨설턴트 1인당 1일 최대 400천 원 이내 편성(교통비 실비지급)

3. 기술의 연구개발비

목	편성기준
컨설팅지원비	·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에 사전 승인 필요 · (컨설턴트 수임료) 1시간당 10만 원 이내 편성 * 단, 컨설턴트 1인당 1일 최대 400천 원 이내 편성(교통비 실비지급)

4.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비

목	편성기준
사업모니터링비	·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1백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에 사전 승인 필요

5. 기타사업비

목	편성기준
홍 보 비	·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에 사전 승인 필요 ** 홍보시 총괄기관 명시 필수
교육연수비	·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25백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에 사전 승인 필요
산학연계비	·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에 사전 승인 필요
조사분석비	·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1백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에 사전 승인 필요

- 인건비, 식비, 자산취득비,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간접성 경비 편성 불가 및 불인정
-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불가
- 행사성 사업의 기념품제작비는 1인당 20천 원 이내로 편성

6. 교육·연수비(1회차 기준)

목	편성기준
① 강 사 비	· 150천 원 이내 × 시간 × 강사인원 * 단, 강사 1인당 1일 최대 400천 원 이내로 편성 * 교통비 실비지급
② 홍 보 비	· 2백만 원 이내 * 교육장 실내 현수막 필수 제작, 실외 현수막, 신문광고 등 ** 홍보시 총괄기관 및 총괄기관 명시 필수
③ 교 재 비	· 20천 원 이내 × 교육인원 + 주관기관 보관용
④ 문 구 비	· 3천 원 이내 × 교육인원
⑤ 음료다과비	· 2천 원 이내 × 교육인원 × 교육일수
⑥ 현장견학비	· (견학비) 30천 원 이내 × 견학인원 × 1일 * 견학지 입장료, 상해보험료, 식비(음료다과비 포함)만 편성 · (차량임차비) 1백만 원 이내 × 1일
⑦ 실습재료비	· 30천 원 이내 × 교육인원 × 교육일수 * 실습재료비의 경우, 실습교육시에만 편성
⑧ 교육장임차비	· 150천 원 이내 × 교육일수
⑨ 기자재임차비	· 5백만 원 이내 편성

- ① ~ ⑨항목 이 외 항목은 원칙적으로 편성이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 총괄기관의 승인 필요
· (이론교육) 1회차당 20백만 원 이내 편성, (실습교육) 1회차당 25백만 원 이내 편성

7. 인건비

목	편성기준
지원센터 인력 인건비	·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거 편성
일용직 인건비	· 64,000원 × 1명 × 1일 * 법정(회사)부담금 포함 ** 일용직 근로자 1주 만근 시에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

8. 지원센터 운영비

목	편성기준
홍 보 비	· 현판·간판 제작(필수),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비 실비 편성 * 기념품제작비 1인당 2만 원 이내로 최대 3백만 원 이내 편성
국내여비	· (시내출장) 일비 2만 원 정액지급 · (시외출장)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정액지급 * 숙박시 숙박비 5만 원 이내 실비지급, ** 고속버스, 철도이용시(지하철 제외) 교통비 실비 지급

운영수당	· (평가·심의수당) 100천 원 × 시간 × 평가(심의)위원 * 단, 평가 및 심의위원 1인당 1일 최대 400천 원 이내 편성
기타운영비	·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일반수수료 등 기타 운영비 편성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편성) * 소모품비의 경우,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개별 취득단가가 30만 원 미만, 총취득가 100만 원 미만인 물품구입에 한해 인정 ** 기관이익금, 위탁사업비,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는 편성 및 집행 불가

·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마련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9. 업무추진비

목	편성기준
업무추진비	· 30천 원 이내 × 참석인원 *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장소·일시·집행대상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에 명확히 기재 필요 ** 건당 500천 원 이상 집행 시 집행대상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필요

- 외부인이 포함되지 않은 회의비 지출 불가
- 주류구매를 위한 지출 불가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불가
- 개인명의로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지출 불가

10. 인건비 산정기준

구분	교육·상담·컨설팅 수행 경력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유관기관 근무자	기업 근무자
자격	수산, 유통, 가공, 지역개발, 관광 및 어업인 교육·컨설팅·상담 수행 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기술지도사, 박사학위자(경영학, 자연과학분야), 노무사 등 관련 등록증 소지자	공공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기업지원 관련 근무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회계, 재무, 인사, 노무, 마케팅 등 분야에서 근무한 자
경력	경력 10년 이상, 최근 10년간 720일 이상 컨설팅의 수행실적이 있는 자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인자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경력 8년 이상, 최근 8년간 500일 이상 컨설팅의 수행실적이 있는 자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경력 7년 이상, 최근 7년간 420일 이상 컨설팅의 수행실적이 있는 자	해당분야 경력 3년 미만인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주관기관 소속의 참여인력은 인건비를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제11장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41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최종보고서와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범위는 총사업비로 정부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총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표 5-12>에 따라 정산하고 사업비 반납액 규모와 제재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사업비 반납액은 총사업비 중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잔액, 정산결과 불인정금액, 이자(발생이자·해지이자)를 말한다.

③ 집행잔액이 1천 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잔액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비를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 5-12〉 제재기준

주요내용	제재조치
○ 총괄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지원센터인력의 전원 부재	주 의
○ 총괄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지원센터의 개폐시간 조정	
○ 총괄기관의 장이 요청한 제출 기일내에 자료 미제출	
○ 지침 미준수	경 고
○ 주의 2회 발생	
○ 현장점검 등에 따른 시정 및 보완요구 불이행	
○ 변경승인 절차 없이 사업비 집행 등 사업추진	
○ 기타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 발생	
○ 어촌으로부터 자부담금 수수(收受)	
○ 기타 도덕적 해이 등 중대한 사항 발생	
○ 경고 3회 발생	지정취소
○ 신청서·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제출	
○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 및 보고	
○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 허위 수당, 측근을 통한 사업비 착복, 목적 외 사용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의 중도포기	
○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해당	연장 제외 가능

제43조(사업비 환수) ① 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잔액 및 이자를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단,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 중단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 잔액 전액을 환수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사업비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총괄기관의 장이 지원금 환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정부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고·독촉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실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증빙내역의 보존)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이 종료된 경우라도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요구에 대비하여 증빙내역 보존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 가능한 제반증빙 서류 및 장부 등을 사업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장 현장점검 및 중간점검

제45조(현장점검 및 중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내·외부위원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사업신청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현장 애로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등 사업의 추진현황
2. 사업비 사용의 적절성, 영수증 관리 및 회계서류작성 현황, 지출비목의 적정성 등 사업비 사용현황
3. 그 밖에 사업수행 및 사업비 사용현황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장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제46조(중간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추진에 따른 주간실적을 담아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은 보고서를 취합하여 검토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7조(최종결과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검토 후 필요시 기한을 정하여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의 장은 수정·보완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취합하고 검토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장 성과평가 및 연장심의

- 제48조(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시점에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및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다(평가는 공정성 등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일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성과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연장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49조(연장심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차년도 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1. 제45조 현장점검 및 중간점검 결과
 2. 제4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3.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률
 4. 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5. 기타 전담기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의 경우 연장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탈락처리).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연장심의를 거쳐 협약 연장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43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별표 2> 제재기준 등에 따라 주관기관이 차년도 센터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장 제재조치 및 지정취소

제50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귀책사유와 <별표 2> 제재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한 경우
3. 제49조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 결과물인 물적·지적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5.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계약, 계약내용을 위배 또는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한 경우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에 따른 총사업비에 대해 지침을 적용하여 제재조치를 적용한다.
- ③ 제재조치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단, 전담기관의 장이 기관차원에서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제재조치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 여부 및 제재조치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결과에 따라 환수 및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지정의 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²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촌특화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비 환수처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기간을 경과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환수·반납된 국비에 대하여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국비)으로 반납된 금액 및 이자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된 금액 및 이자

제16장 이의신청

제53조(이의신청)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심의 또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처리하되 필요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자체심의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이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 이의신청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²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4항 내용 참조

제17장 기타사항

제54조(성과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성과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5조(우수사례 발굴) ① 주관기관의 장은 소공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우수사례를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우수사례 발굴실적을 성과평가 또는 연장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련법령 또는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장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7조(결과물의 소유) ① 특화어촌이 본 사업의 결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상표권,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은 특화어촌의 소유로 한다(단, 2곳 이상의 특화어촌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지적재산권 또한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58조(기타사항) ①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센터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사업기간 중 새로운 규정을 추가 및 개정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④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중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주관기관이 갖는다.

VI. 정책제언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마련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과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관법」, 「관광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촌특화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수급에 대한 전망 등을 분석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여야 함

□ 어촌특화지원센터 제재조치에 대한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사업 부실화를 방지

- 현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어촌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제재조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실운영과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제재조치(안)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전환계획 수립 및 지원 필요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사업 실패 시 다른 어촌활성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센터의 역할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에 실패한 경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2006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농촌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2014

박상우 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해양수산부,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연구」, 2015

〈해외문헌〉

社団法人 中小企業診断協会, 『平成24年度「調査・研究事業」6次産業化推進のための効果的な6次産業化サポートセンターの活用と運営 報告書』, 2013

〈자료검색〉

<http://www.semas.or.kr/web/SUP01/SUP0110.kmd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0&schStr=특화지원&page=1&b_idx=21809&pNm=BOA0101&eventMode=, 『2015년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2차 모집 공고

<http://vegetable.alic.go.jp/yasaijoho/senmon/1311/chosa02.html>, 6次産業化推進のための効果的な6次産業化サポートセンターの活用と運営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503/e20150305174931117860.htm>,

‘2014년 세계 주요 오피스 시장(Office Space Across the World)’ 오피스 임대료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c.do?menuId=0&subMenu=1&query=%EC%96%B4%EC%B4%8CED%8A%B9%ED%99%94%EB%B0%9C%EC%A0%84%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undefined>,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6%B4%EC%B4%8C%ED%8A%B9%ED%99%94%EB%B0%9C%EC%A0%84%20%EC%A7%80%EC%9B%90%20%ED%8A%B9%EB%B3%84%EB%B2%95#undefined>,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open.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침」, 2015

